

## 2025년 재사용 배터리 적용 E-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재사용 배터리 적용 모델 사업화지원 수혜기업 모집 공고

경남·부산의 혁신자원 및 역량을 기반으로 E-모빌리티 제작기업 및 배터리 관련 기업의 혁신 활동과 미래차산업 전환육성을 지원하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『2025년 재사용 배터리 적용 E-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』의 재사용 배터리 적용 모델 사업화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,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8월

(재)부산테크노파크 원장

(사)부산산학융합원 원장

### 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재사용 배터리 적용 E-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
- 모집기간 : 2025. 8. 7.(목) ~ 2025. 8. 14.(목)
- 사업구성

| 구분   | 내용  |
|------|---|
| 사업목적 | - E-모빌리티 제작 기업 및 배터리 관련 기업의 재사용 배터리 적용 산업 전환 및 육성을 위한 재사용 배터리 적용 모델의 홍보 및 바이어 발굴을 통한 수출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역량 강화<br>- 수요 맞춤형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한 사업화 확대 |
| 지원규모 | - 36백만원, 2개사(기업당 18백만원 이내)  |
| 지원기관 | - (재)부산테크노파크, (사)부산산학융합원  |

### II 지원내용

- 지원조건
  - 2023~2025년 재사용 배터리 적용 모델 기술지원 수혜기업

□ 지원대상

- 재사용 배터리 적용 모델 홍보 및 바이어 발굴을 위하여 전시회 참가 및 사업화를 진행하고자하는 기업

□ 지원 프로그램 및 규모

| 프로그램           | 세부내용  | 지원금액             | 지원수 | 지원기관   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|
| 사업화지원<br>(전시회) | - 수요 맞춤형 전시회 참가지원<br>•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, 장치대여, 전시회 참가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 지원 | 최대<br>18,000천원/건 | 1개사 | 부산테크노파크 |
|   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| 1개사 | 부산산학융합원 |

- 전시회참가지원

- 전시회 참가비, 장치대여료, 홍보물 제작비 등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 지원(※지원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임)
- 홍보물 제작비 지원 신청시, 전시회 활용 계획/결과 필수 제출

**Ⅲ 추진일정 및 평가절차**

□ 추진일정

| 구분         |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공고·신청·접수 | - 2025. 8. 7.(목) ~ 2025. 8. 14.(목) |
| ▼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선정평가       | - 2025. 8. 19.(화)                  |
| ▼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협약체결·사업수행  | - 2025. 8. 21.(목) ~                |
| ▼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완료보고서 제출   | - 2025. 10. 17.(금)                 |
| ▼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성과보고회      | - 2025. 11. 20.(목)[예정]             |

※ 상기 일정은 지원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**평가방법**

- 선정평가 : 서면평가 방식으로 최종 선정

※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선정하며,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

□ **평가기준**

| 평가항목     | 평가지표  | 배점 |
|----------|---|----|
| 지원 필요성   | ○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                 | 20 |
|          | ○ 지원대상 제품/서비스 사양, 현 상황, 애로사항,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등 | 20 |
| 지원내용 타당성 | ○ 지원내용, 범위, 수행일정의 구체성                         | 25 |
|          | ○ 지원 금액의 적정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|
| 기대효과     | ○ 지원 대상 제품/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 | 15 |
|          | ○ 고용 및 매출 증대 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|

**IV 신청 및 접수**

□ **접수기간** : 2025 8. 7.(목) ~2025. 8. 14.(목)

□ **접수방법** : 담당자 이메일 접수(※아래 문의처 이메일 주소 참고)

□ **제출서류**

| No. | 제출서류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   | 사업화지원프로그램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| 서식 1   |
| 2   | 신청기업 현황표              | 서식 2   |
| 3   | 기업지원 프로그램 이행확약서       | 서식 3   |
| 4   |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         | 서식 4   |
| 5   | 사업자등록증                | -      |
| 6   |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| 신청일 기준 |
| 7   | 기업 재무제표               | 최근 3년간 |

□ **문의처**

| 기관명     | 담당자명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부산테크노파크 | 정연수  | 051-974-9128 | jys@btp.or.kr       |
| 부산산학융합원 | 김지은  | 051-960-7913 | kje7270@biuca.or.kr |

□ 자료 제출 의무

- 수행과정 중 성과 및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해야 하며, 사업 완료 후 5년간 통합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 기초자료 제출 협조의 의무가 있음

□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사전 제외될 수 있음

| 구분             | 신청시 유의사항   |
|----------------|--|
| 지원제외대상<br>(공통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청기업,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</li> <li>■ 제출기한 경과,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</li> <li>■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, 간이과세자, 기업의 부도</li> <li>■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24호(2023. 2. 8.)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 &lt;별표 2&gt;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한다.</li> </u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업의 부도</li> <li>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4. 파산, 회생절차,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)</li> <li>5.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 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 "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,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.)<br/>           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<br/>             ※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<br/>             ※ 상기의 신용등급이 'BBB' 에는 'BBB+', 'BBB', 'BBB-' 를 모두 포함함</li> <li>6.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</li> <li>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</li> </ol> |